

사회복지종사자 인권 존중 안내문
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4 장기요양요원의 보호에 따라 안내드립니다.

▲종사자의 인권을 존중합니다▲

무분별한 폭언과 폭행, 성희롱 은 관련법 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

인권존중

사회복지종사자도
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입니다

1. 아름다운 말로 존중해 주세요
2. 부당한 요구는 처리할 수 없습니다
3. 무조건적인 사과는 하지 않습니다



(사)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
Korea Association of Long Term Care Center for Seniors

다함께인권존중

우리기관
인권지킴이

우리는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입니다



어르신과 종사자와 보호자가 함께하는

#폭언 #폭행 #성희롱예방

(사)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

사회복지종사자인권

우리 가족의 인권만큼 소중합니다.

- | | |
|---|---|
| 공감 반말, 욕설, 폭언 등
무시하는 언행을 하지
말아주세요~
함께 느끼고 공감해요 | 배려 여러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
아름다운 미소와 배려가
행복한 일터를 만들어 줍니다. |
| 존중 마주하고 있는
사회복지종사자를 존중해
주세요~! 그 사람도 누군가의
귀한 아들, 딸입니다. | 긍정 종사자에 대한 긍정의
감정을 느낀다면, 그때그때
표현해 주세요~! |

"감정노동자보호, 예방이 먼저입니다."

무분별한 폭언과 폭행, 성희롱은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.



(사)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장기요양연구소 평가지원팀

종사자의 인권을 존중해주세요



장기요양 종사자가 돌봄 업무 현장에서
업무 수행과정 중 서비스 이용자 및 그 가족, 이웃 등
이해관계자로부터 경험하는 폭력을 의미 합니다



사회복지종사자 인권 존중 안내문 제공 대장

[illegible]